

4.1.22 전기설비안전관리규정

제정 2000. 04. 21.

개정 2006. 10.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업무조직)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휘명령계통과 연락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할 조직 구성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총장은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되, 관리과장이 이를 보좌하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관리과에 소속한다.
2.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다.

제3조(설치자의 의무) ①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관계 기관이 법령에 의거 행하는 검사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수검에 임하여야 한다.
- ③ 설치자는 전기설비안전관리상 담당자의 긴급 개수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자의 의무)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 부재시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부재시에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교육)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또는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실시) ①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실시에는 본 대학의 업무활동 등과 조정을 기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실시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③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게 청부할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완성하였을 경우에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검사하여 전기관리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 ④ 공사실시에 있어서는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따로 정한 작업지도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⑤ 작업지도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1. 휴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구 등 준비상황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확인

2. 작업시간, 정전시간 및 위험구역의 표시
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 방지 조치
4. 작업책임자의 지명과 책임
5. 작업종료시의 위험 및 측정

제9조(순시, 점검, 측정 등) 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 점검 및 측정은 일일 점검과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요청검사와 따로 정한 순시점검지도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순시점검지도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순시 경로
2. 순시 중의 점검 개소 및 점검 사항
3. 순시점검의 주기

③ 순시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치 않은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리,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혹은 제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토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의 재발 방지) 사고 기타 이상시에는 필요에 따라 임시 정밀검사를 실시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에 유감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과 조작 등) 전기설비의 운전과 조작기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한 제 법규에 따른다.

1. 평소 또는 사고 기타 이상시에 있어서 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조작을 요하는 기기의 조작순서 및 운전방법과 명령계통 및 연락계통
2. 전기설비의 경미한 사고를 수리,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응급조치와 보고 또는 연락 요령
3. 전력회사, 변전소, 영업소와의 연락사항
4. 긴급시에 연락하여야 할 사항, 연락선 및 연락방법의 게시

제12조(방재체제) ① 태풍, 홍수, 화재, 기타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관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재의식을 전 교직원 및 고용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응급자재를 비축하여 재해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본 대학내의 체제를 정비하고 본 대학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및 연락체제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비상재해 발생시에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책무를 행한다.

③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당해 범위의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기록) 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공사 기록
2. 순시, 점검, 측정기록(일상 순시점검, 정기 정밀점검)
3. 운전일지(일상 순시점검, 고장, 경사고 포함)
4. 전기 사고 기록(고장, 경사고, 중대사고 보고서)

② 주요 전기기기의 보수 기록은 <별표 1>에 기록하고 필요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한계) 한국전기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와 안전상의 책임 한계점은 재산상의 책임 한계점과 일치하여야 하며 분기 전주의 부하측으로 한다.

제15조(위험표지) 수전실 기타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사람의 주위를 환기토록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측정기구류의 정비) 전기설비의 안전상 필요한 측정기구류는 항상 정비하여 시설계에 적정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도면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에 대하여 영구 정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수속서류의 등의 정비) 관계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시설계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계	계장	과장	부총장	총장

보수공사 보고서

공사건명 또는 작업명	
정 전 시 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간)
기기명 및 용량 형식 옥내외, 제조번호, 제조사, 기타	기 기 명 : 옥내.외 용 량 : 형 식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상 수 : 제조월일 : 제조번호 : 제조자명 :
작 업 장 소	
작 업 내 용 (상황결과개선, 의견설명도 등)	
절연저항, 기타의 기록 측 정 기 명	
작 업 자 성 명	

전기안전관리자 책임자